

# 반감(反感)이 쌓은 환상, ‘자유로운’ 민간심의기구 ‘영륜(映倫)’\*

송아름\*\*

## 〈차례〉

1. 관에 대한 절대 부정이 낳은 긍정적 민간심의
2. ‘후진국’ 영화를 ‘위한’ 금지 중심의 검열 옹호
3. 영화계 ‘밖’의 영륜과 영화계 내부와의 갈등
4. 권한 대행의 ‘심의’가 이끈 검열 강화라는 모순
5. 허상의 자율성을 전제한 민간심의의와 그 이후

## 국문초록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이하 영륜)는 4.19 정신을 계승하여 과거의 관권검열을 지양하고 영화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심의기구로 설명되었다. 영륜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관권검열을 민간으로 이양시켰고, 무엇보다 영화계의 힘으로 구성된 단체로 평가받으며 한국영화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영륜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활동을 파악하여 내린 결론이라기보다 관권검열의 폭력성을 대타향으로 설정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륜의 활동은 관권검열의 방식과 그리 멀지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영화계와 극단적으로 불화했기 때문이다. 영륜은 한국영화의 수준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그것을 금지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각계 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교부에서 공포하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영륜의 윤리규정은 영륜이 어떠한 태도로 한국영화계를 대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낸다. 게다가 영화의 제작과 거리가 먼 영화인단체연합회(이하 영련) 주도로 진행된 영륜의 발족은 영륜이 영화계 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과는 거리를 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영륜의 발족은 앞서 한국영화 규제의 필요성을 앞세운 사회 인사들과의 친연성을 보인 영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영화를 실제로 만들고 수입하는 이들은 영륜의 운영비를 책임지면서도 늘어난 검열 절차와 맞닥뜨려야 했다. 이처럼 영화계 밖 인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654)

\*\*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연구교수

들로 구성된 영륜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코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는 사실상 관권검열과 유사한 방식의 심의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19 직후 헌법의 개정으로 문교부의 영화검열조차 위헌인 상황에서도 영륜은 문교부의 권한을 요청하며 관권검열과 유사한 위치에 서고자 했고, 정작 영화계 내부와의 논의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영화계를 옹아매는 역설을 유발하면서 피검열자들은 관권검열과 다르지 않은 심의를, 오히려 더 강력해진 규제를 각오해야 했다. 이처럼 영륜은 민간심의기구가 내부적 동력에 의해 결성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권검열의 방식과 권능을 유사하게 따라가려 할 때 결코 자유로운 기구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4.19 혁명, 검열, 대한영화배급협회(=외국영화배급협회(배협)), 민간심의기구, 영화윤리전국위원회(영륜), 영화인단체연합회(영련), 윤리규정,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 행정적 규제, 헤이스 오피스

## 1. 관에 대한 절대 부정이 낳은 긍정적 민간심의

정치·사회적인 결박이 해제되는 국면마다 영화검열의 존재 방식에 대한 시비가 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일본이라는 제국과 부패 정권, 독재의 상징처럼 자리했던 '관권검열'에 반하는 것은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그리고 4.19를 지나 10.26과 1987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국면마다 돌출되었던 민간심의로의 이행은 증거의 중심에 있었다. 단독정부 수립 후 넘쳐나는 외화를 막기 위해 "외국 영화 선정 배심 위원회 같은" "민간 측 각 방면의 전문가"로 조직된 위원회가 "이상적 방안"이긴 하지만 "민주적 문화정치의 구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 정도였던<sup>1)</sup> '민주적 기구로서 민간심의 기구'에 대한 상상은 4.19 직후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이하 영륜)의 발족으로 현실화되었다. "영화 창작표현의 자유와 예술성을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영화윤리를 건강하게 육성"할<sup>2)</sup> 영륜은 "4.19 혁명 이후 영화계가 성취한 모뉴먼트적 업적"이자 "고도한 사회양식의 뒷받침으로서 비로소 권위와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제도"로<sup>3)</sup> 추앙받으며 4.19 혁명 이후 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혁명정신 계승의 증거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심의기구 영륜이 민주적 실천 그 자체로 수용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온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영륜은 과거와는 거리를 둔, 새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식되면서 1960년대 한국영화사 초입을 장식했다. 4.19와 5.16 사이의 짧은 기간이 영화검열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고, 비록 그 방식이 실험 정도에 머물렀을지라도 정부가 영화검열 사무를 민간에 넘긴 것은<sup>4)</sup>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

1) 「외화 수입과 정책」, 《경향신문》, 1949.12.12.

2) 「자율적 심의지향, 영화윤리위원회 창립」, 《동아일보》, 1960.8.10.

3) 「60년의 영화계」, 《동아일보》, 1960.12.21.

4)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한국영화인협회, 1969, 229-230면.

을 만큼 엄격하고 보수적이었던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미 군정의 통제를 받던 시기를 지나 4.19 혁명으로 인해 등장할 수 있었던 순수 민간의 영화 검열기구의<sup>5)</sup> 의의로 충분했던 것이다. 영륜이 결성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검열체제가 지녔던 경직성이 대폭 완화되었다거나,<sup>6)</sup> 한국영화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서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민간사회단체’ ‘영륜’을 위치시키고,<sup>7)</sup> 민주주의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민권을 존중하는 영륜이 4.19 혁명 이후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의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고 평하는 것<sup>8)</sup> 등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영륜의 성립, 그리고 민간심의기구의 운영을 이처럼 절대적으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 역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영륜을 ‘창작 표현의 자유와 예술성 보장하는 것으로, ‘고도한 사회양식의 뒷받침으로서 비로소 권위와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제도’ 등으로 표현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영륜의 성립과 그에 대한 기대에는 과거의 관권검열과 작금의 민간심의가 분명하게 다르며 전자에 비해 후자가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영륜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은 4.19의 민주적 유산이라는 상징성에 기인한 바 클 테지만, 이 민주적 유산을 굳이 영화검열과 관련지은 데에는 민은 관에 반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관을 벗어난다면 억압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기에 국가 검열만 아니라면 예술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당연한 듯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영륜은 관권을 벗어난 단체이기에 폭력적 관권검열과는 달랐고 당국이 검열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는 등의

5)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화사상사, 2000, 117면.

6)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32면.

7) 변재란, 「영화」,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Ⅲ』, 시공사, 1999, 239면.

8) 박지연, 「1960, 70년대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한국영상자료원 편·이효인 외, 『한국영화사공부』, 이채, 2004, 146면.

전제를 했으며, 결국 5.16 쿠데타라는 다시금 정치적인 이슈로 이 민주적인 기구가 활동할 수 없었다는 식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4.19 이후의 영륜이었기에 억압적이면서도 부패한 이전 정권의 관권검열을 대타항으로 설정하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검열을 보여준 '민간 단체로서 위치짓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서술은 지극히 영륜 편에 선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 영륜의 심의 중 빠져나왔던 국가 혹은 영화산업 내부와의 잡음을 당시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의 수준이 영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평하거나,<sup>9)</sup> 사회 요직을 점하던 이들로 영륜이 구성된 것에 대해 독재 정권의 유지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농단했던 영화검열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로 설명할 수 있는 근대적 테제의 근간을 세운 것으로 평가하는 것 등은<sup>10)</sup> 영륜이 비민주적인 과거를 탈피하여 구성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단체로 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서술이기 때문이다.<sup>11)</sup> 영륜이 국가 혹은

- 
- 9) 박지연, 「한국 영화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영화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70면.
- 10) 김윤지, 「최초의 민간영화심의기구, 영화윤리위원회 성립」, 함충범·김윤지·김대중·김승경, 『한국영화와 4.19』, 한국영상자료원, 2009, 88면. 이 글은 영륜에 대해 가장 자세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엘리트층심의 영륜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전적으로 영륜의 입장에서 당대의 갈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영륜은 합리적인 영화 심의라는 목적을 위해 구성된 집단이기도 했지만 당시 지성인들이 공유했던 양식을 실험하는 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시각이라면 영륜과 갈등을 벌이는 모든 일들, 단적으로 영화계 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영륜의 명분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우매한 이들의 대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 11) 이에 반하는 영륜에 관한 논의는 이준엽이 거의 유일하다. 이준엽은 한국영화가 1950년대부터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이라는 특수성과 '리얼리즘'이라는 보편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상품성을 획득하려 했고 이 담론을 주장했던 이들이 영륜의 성립과 심의에 관여하는 바, 영륜이 검열완화를 통해 상품성 높은 영화를 자유롭게 판매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고 영륜의 성립에 그들이 내세운 명분과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이준엽, 「해방 이후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 연구(1945~1965): 정전화된 작품과 비평 담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2, 110-173면 참조). 그러나 영륜에 참여한 인사들은 영화의 수출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으며, 실제 수출되는 영화들은 이들이 주목한 영화와는 전혀 다른

당시 영화산업계와 어떤 식의 갈등을 벌였는지,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당시 영화계가 아니라 영륜이 벌인 모순과 오류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은 이러한 평가에 고려 요소가 되지 못했다. 한국영화사 서술에서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검열에 당연한 듯 깔린 부정적 인식은 영륜이라는 민간심의기구의 위상을 높이 두는 것을 당연하게 했기에, 당대 실제로 영륜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민간심의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든 것이다.<sup>12)</sup>

물론 영륜의 주요 성과로 제시되는 <오발탄>이나 <마부>, <삼등과장> 등 당대의 우울한 현실을 그리거나 풍자한 작품들의 등은 민간심의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4.19 이후 개봉되었고 5.16 직후 상영금지 되면서 영륜의 심의가 관권검열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영륜 검열과정 중에도 아이를 업은 채 목 매단 여성의 시신이 잔인하니 삭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거나<sup>13)</sup> 5.16 이후의 <오발탄>의 재검열은 5.16과는 시차를 두고 주시됐던 여러 작품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sup>14)</sup> 등이 가려지면서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1950년대 후반의 영화검열은 수익과 관심이 집중되고 절차가 복

---

맥락에 놓인 장르 영화들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은 좀 더 많은 설명을 요한다.

- 12) 이러한 시각은 연구자의 무의식 역시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영륜의 긍정적 가치가 먼저 놓였을 때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요소는 민주적인 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미 다수의 논의가 이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13) 1961년 2월 14일 영화윤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심사 논평서에는 희망 사항으로 해당 장면이 지적되어 있다. 덧붙여 ‘희망 사항의 실현을 보아 삭제된 횡트는 보관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이 장면은 개봉 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오발탄> 심의서류 참조.
- 14) 1962년 초 공보부는 상영이 중지되었던 여러 작품의 재검열을 실시하는데, 이때 <오발탄>은 내무부, 문교부, 중앙정보부 등에 상영 불가, 최종적으로 상영 불가 판정을 받는다. 이때 내무부는 이 작품의 불가 사유로 퇴폐풍조를 적기도 한다. <오발탄> 심의서류 참조.

잡했던 외화 검열에 집중되어 있었고,<sup>15)</sup> 외화에 비해 국산영화는 절차나<sup>16)</sup> 내용 등이 다소 느슨했던 상황<sup>17)</sup> 미루어 본다면 <오발탄>의 개봉을 영륜의 결과로 보는 것은 한편으로 5.16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 상영 불허를 기준으로 역행하여 평가한 것은 아닐지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영륜은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영륜이 진실로 '자유로운 민간심의기구'로 기능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실제로 영륜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결과 얼마나 관련검열과 달랐을지, 또한 '영화윤리전국위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과연 영화계와 얼마나 깊은 유대를 가지고 운영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긍정적이어야 할 4.19 혁명의 유산 앞에 굳이 답해야 할 질문이 되지 못했다. 물론 1960년 9월에 들어서야 영륜의 심의가 본격적

- 
- 15) 가령 1957년 한 기사에서는 국산영화의 사전 시나리오 검열이 포함된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지만(「영화 대본의 제작 전 검열을 박함」, 《경향신문》, 1957.1.30.) 1956년 7월 21일 공포되었던 문교부 고시 24호에 이어 같은 날 문교부 고시 25호의 '영화공연허가사무취급요강'으로 공포된 구체적인 행정처리 방식에는 '5. 검열은 이를 대본검열과 실사검열로 구분한다. 대본검열에서 그 내용이 상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시는 실사를 거치지 않고 취할 수 있다.'라는 대본의 사전검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산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 이 조항은 외화 검열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의미일 터, 실제로 문교부 고시 25호를 살펴보면 상영허가의 허가 신청은 사단법인 대한영화배급협회를 경우토록 한다거나, 검열의 실시는 신청 절차 순서대로 하되 국산영화를 우선 취급한다는 등의 항목을 통해 당시의 검열이, 그리고 각종 규정이 외화 중심이며, 국산영화는 검열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1957년 9월 9일 문교부 고시 제47호로 공포된 '영화공연허가사무요강'에서 처음으로 첫 항에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의 공연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고, 1960년 8월 18일 문교부 고시 제132호의 '영화및공연물사무요강'이 이르렀을 때 '국산영화를 국내에서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상영 전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경우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상영신고를' 해야 한다는 외화와 동일한 행정적 절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검열 서류에서 제형의 경우를 거친 도장은 이미 1956년의 서류에서도 발견되는 등 이때까지도 국산영화의 행정처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17) 후술하겠지만 1957년 영륜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영화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설명하며 이 규정이 수입영화에 관해서가 아니라 국산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윤리규정이라며(「영화윤리의 맹점」, 《동아일보》, 1957.8.28.) 그 엄밀함과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으로 시작되었고 1961년 5월 21일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사전 검열이 실시되었던 점을 미루었을 때, 그 활동이 짧았던 만큼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당시는 아직 영화와 관련한 법 조항이 없어 면밀하게 검토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영륜에 대한 깊은 논의를 잠시 미뤄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영륜의 규제 중심의 규정들과 구성원의 특징, 영륜 시기 일어났던 잡음 등을 생각한다면 4.19 이후 영화계의 열망이 반영된 기구로 영륜을 위치짓는 것을 곱씹게 된다. 가령 이런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다. 한국영화계에서 ‘자유로운’ 민간 심의가 가능한가. 바꾸어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19 이후의 민간심의는 과연 관권검열과 다른가, 아니 다를 수 있었는가.

이 글은 영륜이 구성되는 과정과 심의의 방식 등을 따라가며 1960년대 초 한국영화계에서 민간심의기구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사회적인 전환점뿐만 아니라 영화검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졌던 민간심의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조건도 없는, 그러니까 관권검열과는 정반대 편에 서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완전한 자유를 전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영륜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자 했고 문교부와 (부정적일지라도) 관계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당한 권한을 얻고자 했으며 결국 영화계와 불화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민간심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4.19 혁명의 결과라는 수식과 함께 하며 이상을 실현시킨 기구로 설명되었던 영륜을 영화계 내부에 위치시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한국영화계 내부에서 민간심의가 어떻게 이상과 멀어졌는지를 밝히면서 한국영화 검열 내 민간심의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후진국' 영화를 '위한' 금지 중심의 검열 옹호

영륜에 대해 논하기 위해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질문은 한국영화계가 '민간' '심의'라는 이름 하의 '완화된' '검열'을 왜 굳이 유지시키려느냐에 대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자유가 허락될 것이라 기대하는 순간마다 돌출된 것은 검열의 철폐가 아닌 관권검열을 벗어난 심의였다. 비단 4.19 직후뿐 아니라 1950년대 후반 수위 높은 외화의 유통으로 인해 문교부의 예술과장이 경질됐을 때에나<sup>18)</sup> 검열로 인해 영화계의 불만이 높아졌을 때에도<sup>19)</sup>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을 만큼 민간심의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민간심의는 국내에서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었고 당연히 눈에 띄만한 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었기에 민간심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럼에도 '민간'으로 검열을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검열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검열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집단에 따라 민간심의에 대한 기대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점에서 영화의 민간심의가 관권검열과 전혀 다른 방향에 놓일 수 있는 것이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민간심의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은 한 설문에서 드러나는데, 4.19 직후 한 잡지에서는 약 15명의 각계 인사들에게 4.19 이후 영화계 내 검열제의 존속과 그 수정 방향,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며 의견을 듣는다. 이들은 검열을 한다면 관이나 민의 합동검열 혹은 사회 각 층의 인사를 섭외하는 식의 자유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대체로 민간심의와 비슷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검열의 존속 자체에는 분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검열의 폐지를 주장했

18) 「난파된 검열의 시·정책」, 『국제영화』, 국제영화사, 1957.10. 41면.

19) 「좁은 검열 관문 가위에 노이로제」, 《동아일보》, 1959.4.24.

던 이들은 영화제작자나 외화 수입업자 등이 유일했으며, 소설가·판사·교수·평론가 등 훨씬 많은 수의 '사회 인사들은 모두 검열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던 것이다.<sup>20)</sup> 당연히 영화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의견 차이는 짐작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검열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회 인사들의 시선이었다. '아직은' 영화의 내용을 자율에 맡길 수 없고, 한국영화는 통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간심의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케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사회 인사들이 이후 영류의 심의를 맡는 주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심의의 방향은 짐작 가능하다.

영화계 내부에서 검열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우던 민간심의의 원천은 미국의 영화 윤리기구였다. 미국의 영화 윤리기구는 "영화제작자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규율에 따라 "문화 활동으로서의 영화의 윤리를 향상"시킨 것이며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었던 것이다.<sup>21)</sup> 4.19 직후 영화검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심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때에도 이 기구, 즉 미국의 자율적인 윤리기구 '헤이스 오피스'가 그 대안처럼 등장했다. 1915년 미국 대법원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의 보호 대상에 영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영화에는 사회와 정부의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미국영화 제작자 및 배급자 협회(MPPDA)', 당시 책임자 윌 헤이스(Will H.Hays)의 이름을 딴 헤이스 오피스였다. 영화업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 협회는 영화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헤이스 코드 등의 자체규약으로 영화계를 통제하며 밖으로부터의 검열에 대항하고자 했다.<sup>22)</sup> 국내에서 민간심의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했던 헤이스 오피스는 국산영

20) 「각계에서 말하는 검열 존폐와 그 방안: 관료적·독선적 경향은 배격하자」, 『국제영화』, 국제영화사, 1960.7. 44-45면.

21) 「영화대본의 제작 전 검열을 박함」, 《경향신문》, 1957.1.30.

22) 이용관, 「헐리우드 검열체계」, 『영화연구』 8, 한국영화학회, 1991, 81면.

화가 관권검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하면서 자율적 윤리기구는 영화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해야 할 덕목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헤이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적' 방식은 국내 영화계에 적용됐을 때에는 한 집단을 겨냥, 다소 왜곡된 해석으로 귀결된다. 헤이스 오피스를 언급하면서 민주적이라 평한 것은 이 단체가 바로 '업자들' '스스로'가 세운 기구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긍정하는 기저에는 '미국의 '업자들과 그들이 만든 영화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존중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그들이 '자율적인' 규정을 만들어 국가 검열과 거리를 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헤이스 오피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업자들에게 적용되면서 정반대로 뒤집힌다. 저질영화를 양산하는 제작자들은 강력한 국가 검열을 초래했으며 민간심의가 시작된대도 아직은 검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만약 영륜이 만들어진다면 근본적인 도달점은 제작업자의 자숙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게 된다면 무심사도 가능할 것이라며<sup>23)</sup> 제작업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상에 있다. 국내 영화업자들에 대한 불신은 당국이 1954년 입장세 면세 조치를 실시한 후 갑작스레 국산영화의 제작이 늘어나며 저질의 영화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검열을 해야 한다는 논조로도<sup>24)</sup> 영화가 늘어나 영화예술이 아닌 투기사업이 되고 있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과도<sup>25)</sup> 연결된다. 즉 민간심의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갑작스런 국가의 해택으로 상흔에 빠진 업자들이 상업적 저질영화를 양산하고 있으니 이를

23) 「올바른 영화윤리를」, 《동아일보》, 1960.9.30.

24) 「영화대본의 제작 전 검열을 박하」, 《경향신문》, 1957.1.30.

25) 「대본을 사전 검열, 국산영화육성규정을 제정」, 《한국일보》, 1957.1.27.(1945~1957, 630면). 덧붙여 본고에서 인용하는 1957~1963년 사이의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기사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엮은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시리즈 "1945~1957"(공간과 사람들, 2004), "1958~1961"(공간과 사람들 2005) 편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이를 표기할 때에는 본서에서 재인용한 기사의 게시일과 함께 인용한 책의 연도와 쪽수를 함께 표기할 것이다.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 속 검열의 당위성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영화는 관객 대중에게 영합한 것이기에 수준이 낮고, 수준이 낮은 영화는 수준이 낮은 장면을 잘라냄으로써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 속에 성립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과 영화의 질적 혹은 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수준이 낮은 영화의 수준이 낮은 장면’에서 언급되는 것이 대체로 외설이나 퇴폐풍조 등과 관련한 것이라 할 때, 이 장면들의 제한은 영화의 예술적 수준이 아닌 도덕적 수준의 상승에 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산영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이기에 관리, 즉 검열이 필요하다는 비논리는 정합적인 것처럼 작용하며 오랫동안 검열의 전제가 되었다. 이와 맞물리는 업자와 대중에 대한 폄하, 역시나 궤를 같이하는 상업성 추구에 대한 혐오<sup>26)</sup> 등은 검열의 양상을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짓는다. 검열이 권장과 금지의 양면을 가진 것이라 할 때, 저질영화는 금지항목을 설정하고 걸러내는 것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처 영화가 성장하지 못한 시기, ‘수준 낮은 영화에 대한 대중의 보호’, ‘상업성에 찌든 영화에 대한 예술성의 옹호’와 같은 명분은 오랫동안 검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논조가 국가가 검열을 유지하는 기초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는 군정법률 제68호의 ‘활동사진의 취체(1946.4.12.)’와 역시 군정법률 제115호 ‘영화의 허가(1946.10.8.)’였는데, ‘활동사진의 취체’에는 영화와 관련한 업무를 ‘조선정부 공보부’로 이관한다

26) 이승희는 영륜 이후 이어지는 민간심의기구 예륜에 관한 논의에서 예륜이 ‘예술’ 대 ‘비예술’, ‘오락예술’, ‘대중예술’의 구도를 형성, 순수예술을 지키기 위한 대중예술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양상의 근거에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이승희, 「藝倫의 역사적 추이와 제도적 입계」, 『민족문화사연구』 63, 민족문화사학회, 2017, 308-309면). 상업성만을 좇는 영화를 규제하기 위해 검열이 필요하다는 논조, 그리고 이를 주도한 이들이 식자층이었다는 점에서 영륜도 예륜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

는 것, 그리고 '영화의 허가'에는 일본 정부의 선전과 통제에서 벗어나 '영화산업의 질서있는 운영을 수행하며 영화 내용의 건전한 기초를 확립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영화 내용의 건전한 기초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발표된 문교부 고시 제24호 '공연물 허가규준(1956.7.21.)은 위의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제한사항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이때 발표된 총 8개의 금지규정은<sup>27)</sup> 약 5개월 후 같은 해 12월에 '공연물 검열세칙'이라는 명칭을 달고 1. 국가법률, 2. 종교·교육, 3. 풍속, 4. 성관계, 5. 잔학성, 6. 기타 등 총 6개 항목의 36개의 세칙으로 구체화 되어 적용되기 시작한다.<sup>28)</sup>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세칙의 내용은 이듬해 민간단체의 윤리규정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영륜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영륜 이전, 1957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에서는 최초의 민간심의기구라 할 수 있는 영화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구성한다. 문총의 윤리위는 제작이 활발해졌지만 영화윤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고 "영화 전반에 걸쳐 엄정한 윤리성의 규정과 발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민간기구였다.<sup>29)</sup>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교부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한 부분에서 문교부 고시 24호와 차이를 보이는데 문교부 고시는 공연물의 허가규준을 둘로 나누어 허가의 항목과 저촉되지 않아야 항목을, 그러니까 영화의 허가 방향을 정할 때의 금지항목뿐 아니라 권장의 방향 역시 제시했다면<sup>30)</sup> 윤리위의 윤리규정은 권장 방향을 삭

27) 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위신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2) 국헌을 문란케 하는 사상을 고취할 우려가 있는 것, 3) 우리나라 국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민 교육면에 지장을 주고 공익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5) 양풍미숙을 문란케 하고 국민 도의를 퇴폐케 할 우려가 있는 것, 6) 위법 파양(破壞) 등을 위주로 한 것 또는 잔학성을 묘사한 것, 7) 제작기술이 극히 졸렬하고 체계가 서지 않은 것 또는 제작연대가 과도히 경과한 것, 8) 기타 국민문화의 진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다. 「문교부 고시 제24호」, 『관보』 제1603호, 공보실, 1956.7.21. 호외 1면.

28) 「문교부, 공연물 검열세칙 작성」, 《동아일보》, 1956.12.29.

29) 「국산영화윤리를 규정, 국가·법률·사회·교육·종료」, 《경향신문》, 1957.8.22.

제한 채 금지항목만을 구체화 시키고 있었다. 갑작스레 발표한 듯 보이는 1956년의 문교부 고시 24호는 1955년과 1956년 각각 <운명의 손>과 <자유부인>의 키스 장면으로 문제가 생긴 직후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문교부의 세칙과 유사한 윤리위의 윤리규정은 갑작스레 등장한 ‘민간의 금지규정이었다.

문충 윤리위의 윤리규정은 ‘1. 국가, 2. 법률, 3. 사회·도덕/풍속, 4. 교육·종교, 5. 기타의 5개 항목 내 36개의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때의 일반원칙은 “영화의 내용(줄거리, 부분적인 장면, 회화)에 있어 인간성을 유린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의성을 저하시키는 작품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국가적인 행위나 악이나 범죄 등을 경시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되며, 미풍양속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다.<sup>31)</sup> 이 규정이 발표되자마자 “어용 정신이 농후하게 표현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법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거나 서울에 매음 행위자들이 가득 하지만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왜 영화에서는 암시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를 비판하며<sup>32)</sup> 이 규정의 과도함을 지적할 정도였다. 실제로 윤리위의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sup>33)</sup> 그 규정이 영화계 내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 되는’ 항목을 나열하고 금지로서 국산 영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윤리위의 규정이 권장 방향을 제시하려 했던 관권검열보다도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 할

30) 허가 항목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순수한 예술적 감명과 명량한 오락을 통하여 자유세계 생활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 2) 애국, 정의, 용감, 의협, 개척 등의 정신을 강조한 작품, 3) 종교 또는 도덕에 관한 건실한 모-티브를 가진 작품 또는 인도주의를 기조로 하는 건전한 문예 작품, 4) 역사 또는 전기에서 취재한 것으로서 과거나 현재의 위인 또는 사건을 통하여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작품, 5) 건실하게 사회문제를 취급한 작품, 6) 교육, 보도, 선전, 산업, 기타 기록 등 내용을 가진 문화작품 등이다.

31) 「국산 영화윤리를 규정」, 《경향신문》, 1957.8.22.

32) 「영화윤리의 맹점」, 《동아일보》, 1957.8.28.

33) 제작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심의가 결의되었다는 한 기사에서는 문충이 영화윤리위원회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간판이니 업자들의 영토가 만들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싣는다. 「자율적 윤리」, 《동아일보》, 1959.7.8.

수 있다.<sup>34)</sup>

4.19 이후 난항을 겪다 1960년 8월 5일 발족한 영륜 역시 제일 처음 발표한 것은 영화윤리규정이라는 관리 항목이었다. 국가와 사회, 법률, 풍속, 성, 교육, 일반원칙 등으로 구성된 영륜의 윤리규정은 위의 두 윤리규정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35)</sup> 영륜의 윤리규정에는 문총의 윤리위 영화윤리규정에는 없었던 “극영화에 있어 전기 각 항에 해당되는 표현을 피한다. 단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따라서는 판단의 여유를 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고, 사실 명시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륜은 심의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려 했다. 8월 발족,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9월에 들어 심의업무를 시작한 영륜은 약 3개월 후 영화선전윤리협의회를 발족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문화영화, 기록영화, 영화의 예고편 등도 심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인데<sup>36)</sup> 이러한 영륜의 움직임은 기존 물의를 빚는다고 판단했었던 영화계 내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 선정적인 영화 선전물에 대한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륜은 이에 대해 영화계 내부의 여론을 살피기보다 사실상 고시를 발표하던 문교부의 업무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는 명분만으로 동의를 구하기 힘들었고, 영화계 내 협회들이 반발하여 선전물과 관련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sup>37)</sup> 사실상 금지를 중심으로 한 민간심의는 관련검열의 방식과 동계를 그려갔다.

영륜의 영화윤리규정으로 돌아가 본다면 어쩌면 이러한 평가는 억울할 수도 있다. 영륜의 규정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각종 규칙들 중 수적으로

34) 이러한 규정을 발표했던 문총의 인사들은 이후 영륜을 구성하는 할 때에도 중요하게 개입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상술할 것이다.

35) 영륜의 윤리규정은 기사 「검열제도 폐지에 따르는 영화윤리」(《서울신문》, 1960.8.11. (1958~1961. 558-55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문화, 기록영화도 심의, 12일에 영화선전윤리협의회발기」, 《경향신문》, 1960.12.10.

37) 「영화선전에도 윤리를」, 《경향신문》, 1961.4.14.

가장 적었고 그렇기에 표면적으로는 넓은 범위를 수용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sup>38)</sup>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넓은 범위’에 있었다. ‘국가와 사회, 법률, 풍속, 성, 교육, 일반원칙’과 같이 변하지 않은 항목 내에서 규정 조항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각 항목이 포괄적으로 서술되었다는 다른 표현일 터, 이는 검열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세세한 규정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검열도 대처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역이라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sup>39)</sup> 결국 이러한 조항은 영류의 심의를 담당하는 이들의 관

38) 배수경은 영류의 규정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지만, 윤리적 기반이 보수적이었다고 평한다. 배수경,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32면.

39) 다음의 성(性)과 관련한 문교부의 공연물 검열세칙과 영류의 영화윤리규정을 비교해 보자.

[문교부 공연물 검열세칙]	[영류의 영화윤리규정]
4. 성관계 1) 성교를 표시한 것, 특히 근친 간의 성교는 암시도 불허한다. 2) 불의의 성관계가 정당화하거나 매혹적으로 취급된 것 3) 강간 색정 도촬 변태성욕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언동의 표시 또는 함의하는 자극적 표현 4) 성행위나 음란한 정욕을 표시 상징하는 무용 5) 연애나 연락(宴樂)장면에서 유방, 성기를 무마(撫摩)하는 행동 6) 외설한 감을 주는 성기 노출 7) 과격하고 음란한 키스 포옹 선정적인 자세	성 1) 결혼제도 및 가정의 신성을 옹호하며 저급한 성관계를 공인된 형식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2) 간통과 불륜한 성관계를 정당화하거나 매혹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연애장면은 열정을 자극하도록 취급하지 않는다. 4) 매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5) 색장도촬변태 성욕을 제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6) 분만장면을 묘사하지 않는다.

문교부의 검열세칙이 구체적인 신체 부위의 노출이나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영류의 윤리규정은 ‘저급한 성관계’, ‘매혹적인 것’, ‘열정을 자극하도록’ 과 같이 두루 뭉술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검열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후자는 전자에 비해

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판단을 내릴 '사회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영륜의 발족에 앞장섰지만 결코 내부자가 될 수 없는 영화계 밖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 3. 영화계 '밖'의 영륜과 영화계 내부와의 갈등

4.19 이후 사회에선 기대에 찬 분위기가 넘쳐났지만 영화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국산영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되어 오던 입장세법은 1960년 3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외화와 국산영화 사이의 과세 차이가 크게 줄었고,<sup>40)</sup> 입장하는 관객 수에 부과하던 입장세는 극장의 좌석수와 입장료 및 상영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정액세를 채택하면서<sup>41)</sup> 영화를 제작해도 흥행이 기대되지 않는 국산영화는 상영할 극장을 찾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4.19 이후로 자금 순환이 되지 않아 작품은 제작되지 못했고, 이전 정권에서 상영금지가 되었던 외화들이 상영되기 시작하면서 국산영화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다.<sup>42)</sup> 이 상황은 4.19 이후 마치 온 영화계가 민간심의를 바랐고 영륜의 발족을 위해 움직였다는 듯 서술했던 내용을 의심케 한다. 게다가 대한영화배급협회(이하 배협)<sup>43)</sup>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각기 나뉘어 갈등을 빚다 가까스로 합의하여 영화

---

더욱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은 규정이며 기준 역시 모호하다 할 수 있다.

40) 「시비, 새 입장세법 개정안」, 《동아일보》, 1960.6.10.

41) 「일대 혼란 일으킨 개봉극장, 입견포도 정원으로」, 《서울신문》, 1960.3.3. (1958~1961, 412면); 「좌석·상영회수 감축-정액세 실시 후의 극장가」, 《동아일보》, 1960.3.3.

42) 「좌담회-한국영화가 갈 길」, 『씨네팬』, 입체문화사, 1961.1., 68-70면.

43) 대한영화배급협회는 1960년 8월 13일 자로 명칭을 외국영화배급협회로 변경한다(「배협' 명칭 변경」, 《한국일보》, 1960.8.23.(1945~1957, 576면.)). 두 단체는 성격이 같고 명칭만 바뀌며 영륜을 구성하던 시기에는 배협의 명칭을 사용하므로 본고에서는 1960년 8월을 넘긴 시점이라 해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배협을 사용할 것이다.

윤리전국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라면, 영륜 내에서 배협과 제협 같은 영화를 직접 수입·제작하는 업자들의 역할이 보조금을 납부하여 영륜을 ‘유자’시키는 것이었다면 더욱 그렇다.<sup>44)</sup>

그렇다면 4.19 직후 민간심의기구의 명분과 필요성을 주장, 영륜의 구성에 앞장섰던 ‘영화계’는 누구일까? 영륜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영화인단체연합회(이하 영련)으로 영련은 영화윤리위원회 구성대책위원을 선정하고 구성대책위까지 꾸리는 등 영륜의 발족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 단체였다.<sup>45)</sup> 영련은 한국영화인협회, 약칭 영협의 전신으로 해방 후 대한영화협회의에서 1950년 대한영화협회로 개칭 후 1954년부터 발족한 기술협회, 시나리오작가협회, 감독협회, 그리고 이듬해 배우협회 등이 연합하여 1955년 창립, 그 해 문충에 가입한 단체였다.<sup>46)</sup> 영련은 그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60년에 일부 제작자의 횡포로 인해 문란해진 영화계의 질서를 수습하겠다고 단체의 재정비에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문충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영화계 내 큰 실력단체가 될 것 이란 기대가 서려 있었다.<sup>47)</sup> 문충은 앞 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윤리위를 구성했던 단체로 매우 관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집단이었다. 4.19 직전 문충을 등에 업고 부상을 기대한 영련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충 내 윤리위의 인사들이었던 이들이 영륜의 심의위원으로도 포함 된다는 점에서 문충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충은 설립 당시인 1947년 반공으로 이행 중인 국가와 궤를 함께 하며 정부에 문화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예술원을 설립토

44) 제협이나 배협, 극장협회 등의 역할은 영화 심의에는 의결권 없이 유지위원회, 즉 영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율적 심의지향, 영화윤리위원회 창립」, 《동아일보》, 1960.8.10.

45) 「영화윤리위구성」, 《경향신문》, 1960.5.13.

46)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 영화진흥공사, 1977, 36면. 영련의 문충에 가입에 대해서는 이영일, 앞의 책, 234면 참조.

47) 「영화계 질서는 수습되나」, 《동아일보》, 1960.4.6.

록 하는 등 예술인과 문예 조직 내 상당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sup>48)</sup> 어느 정도의 보수성과 국가와의 친연성이 예상되는 단체였다. 영화법 제정 전 문교부가 영화 대본의 사전 검토를 받고 우수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도모 하겠다고 영화육성규정을 제정하려 할 때, 그 근거로서 문화보호법을 들어 예술원과<sup>49)</sup> 작성하려 했던 것은<sup>50)</sup> 이러한 문충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륜은 바로 이러한 제도권 내 단체에 속해 있던 영화계 집단으로 영화감독이나 배우, 시나리오 작가나 기술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다. 4.19 이후 영륜의 준비위원을 살펴보면 문충 윤리위의 부위원장이나 간사, 소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sup>51)</sup> 영륜이 영륜의 구성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다수의 사회 인사들과 함께 논의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8) 남원진은 문충이 반공국가의 정착 과정에서 예술인과 문예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문화 보호법을 통해 예술인들이 보상과 동시에 관리에 놓이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과정 연구」, 『겨레어문학』38, 겨레어문학회, 2007, 195-222면 참조.). 문충은 5.16 이후 해산되었다가 1962년 1월 5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예총)로 재탄생한다.

49) 예술원은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 선거령(1954.1.23.)'에 근거, 이를 통해 선출된 회원들로 구성된다. 결국 예술가의 보상일 수도 있는 예술원의 지위라는 것은 관리 아래 놓이며 이는 국가와의 친연성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남원진, 위의 논문 참조.

50) 「'대본'을 사전 검열, 국산영화육성규정을 제정」, 《한국일보》, 1957.1.27.(1945~1957, 630면.). 이때 문화보호법 제29조의 내용은 '정부는 건전한 예술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극장의 운영 또는 예술의 공연에 관하여 예술원의 결의를 얻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이다. 이 조항을 보면 예술원의 지위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논의 이후 등장한 것이 문충의 윤리위, 그리고 윤리규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산영화육성규정'을 제정하겠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문교부에서 내용상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문교부 고시 제24호와 직후 '공연을 검열세칙'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충이 위의 기사 직후인 1957년 2월 영화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그해 8월에 윤리규정을 발표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51) 「각계에서 31명을 선정, 영륜 준비위원으로」, 《한국일보》, 1960.5.16(1958~1961, 482면.). 영륜의 준비위원으로 나열된 이들 중 문충 윤리위에 속해 있던 이들은 4명으로 윤봉춘과 오영진은 윤리위의 부위원장, 황영빈은 상임간사, 이청기는 소위원이었다. 이준엽 역시 문충 윤리위와 영륜의 인사들의 겹치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이준엽, 앞의 논문, 164-166면.) 보고에서는 문충과 영륜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영련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시된 영련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이전 문충 윤리위의 구성원들이나 영화평론가,<sup>52)</sup> 문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민간심의를 위해 의견을 교환한 이들을 중심으로<sup>53)</sup> 4.19 정신의 계승으로서 과거의 폐단인 검열을 철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영련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영련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련은 제협이나 배협이 기대했을 민간심의와는 그 방향이 다를 뿐 아니라 보수적인 측면이 더욱 강한, 그리고 설립의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영련의 발족에 함께 했었던 배협과 제협은 같은 시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등 직접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데에 관여하는 이들로 각자의 독립적인 협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영련의 구성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련이 영련에 대한 논의를 끌어갈 때 제협과 배협은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4.19 이후 배일정책이 전환될 기미가 보이자 업자들은 관객들이 호기심을 보일 만한 일본영화의 수입에 관심을 두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배협은 일본영화의 수입을 신청해 당국을 당황

- 52) 호현찬은 1957년 일간신문 영화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시네펜클럽이 주동하여 영련이 발족했다고 쓰고 있다. 특히 위원장에 시네펜클럽 회장인 시나리오 작가 이청기가 선출되었다는 것,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유일한 순수민간기구의 탄생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호현찬, 앞의 책, 114면.
- 53) 1960년 5월 16일 문교부는 민간심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영화계 및 작가, 대학교수, 종교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공청회에 나타난 영화검열제의 시비」, 《동아일보》, 1960.5.18.). 이 중 영화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는 황영빈 한 사람으로 이조차 영련 인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공청회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한 잡지의 설문 조사에 임했던 이들과 정확하게 겹친다. 이러한 상황에 미루어 본다면 잡지의 설문은 공청회의 내용을 정리했거나, 해당 자리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져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각계에서 말하는 검열 존재와 그 방안-관료적·독선적 경향은 배격하자」, 『국제영화』, 국제영화사, 1960.7., 44-45면.). 그리고 이들 중 다수, 즉 허백련, 김소동, 황영빈, 이청기, 정비석, 권순영, 오영진 등은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사 내 영련의 준비위원과도, 이후 윤리위원으로 추대되는 이들과도 상당수 겹치고 있어(「검열제도 폐지에 따르는 영화윤리」, 《서울신문》, 1960.8.11.(1958~1961, 558-561면.)) 영련의 인사들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영화검열 자체의 존속을 주장한 이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케 했고<sup>54)</sup> 제협은 일본 제작사가 한국영화에 대한 수입을 원한다는 문건을 가지고 있다며 국산 영화를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작품의 접수를 받고자 했다.<sup>55)</sup> 두 단체가 갑작스런 사무를 예고하면서 갈등은 심해졌고, 각자 문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하며 대립은 극에 달한다. 두 단체는 국산 영화 제작편수에 따른 외화 수입의 할당제와 일본영화 수출입권을 국산 영화 제작자에게 한정하는 사안을 두고 부딪혔고,<sup>56)</sup> 4.19 이후의 검열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제협은 영륜의 구성을 긍정하며 실제로 처음 민간심의기구의 구성에 적극적이었던 영륜과 함께 영화윤리위원회창설 준비위원회를 개최,<sup>57)</sup> 이후 영화윤리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sup>58)</sup> 배협은 윤리위원회는 시기상조이며 외화는 해당 국가에서 자체적 프로덕션 코드의 검열을 거쳐 나오기에 심의가 필요 없으며<sup>59)</sup> 자문 정도로 충분할 것이니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며<sup>60)</sup> 7월 2일 자체적인 외국영화윤리위원회를 조직했던 것이다.<sup>61)</sup>

54) 「재빨리 일본영화수입신청 일부 업자 태도에 당국자들 당황」, 《동아일보》, 1960.5.5.

55) 「우리 영화 대일수출 계획 제협서 희망 작품 접수 중」, 《한국일보》, 1960.5.16.(1958~1961, 482면).

56) 「제협과 배협의 분쟁 진상 그들은 왜 싸우고 있나? 진정서에 나타난 진상」, 『국제영화』, 국제영화사, 1960.8., 47면.

57) 영륜과 제협이 함께 영륜의 시작점에 선 것이 진실로 같은 목표를 가진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감독과 배우 등을 중심으로 한 영륜과 제작자를 중심으로 한 제협은 과거부터 다양한 이권의 문제로 부딪혀 온 단체였고 영륜을 구성하던 시기에도 과거 친정부적인 배우의 출연 문제를 두고 날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4.19 이후 이 두 단체가 빠르게 함께 한 배경에는 배협 즉 외화 수입업자들에 대한 반감을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영륜과 제협, 배협까지가 동의하여 영륜을 구성한 직후인 9월에 제협과 영륜 등 국산영화 내 7개의 단체가 국산영화위기가태투쟁위원회를 구성하며 5개의 건의사항을 내놓는데 이 중 3개가 외화 수입의 제한, 수입권의 국산 영화계로의 이양 등 배협을 견제하는 것이었다(「국산영화 위기가태투위 발족」, 《동아일보》, 1960.9.23.). 이러한 상황은 제협과 영륜의 초창기 합의 역시 적극적인 동의 하에 움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암시한다.

58) 「둘로 갈린 영륜, 옥신각신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경향신문》, 1960.7.9.

59) 「두 개의 영화윤리위 한 위원회로 통합이 시급」, 《동아일보》, 1960.7.8.

60) 「좌담회: 우리의 주장은 이렇다-문교부·제협·배협」, 『국제영화』, 국제영화사, 1960.8., 50면. 좌담일은 두 단체가 갈등을 겪던 중인 6월 14일이다.

두 단체를 둘러싼 상황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러한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외화 수입업자와 국산영화 제작업자가 명확히 분리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sup>62)</sup> 영화계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외화 수입업자였고 당국은 외화 수입에 비해 많이 기울어진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영화의 입장세의 면세책을 폈지만<sup>63)</sup> 외화 수입에 비한다면 이것으로도 국산영화가 그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외화 수입업자들의 수익은 국산 영화의 제작으로 투자되지 않아 갈등이 있었고 당국이 나서 우수한 국산영화나 해외 수출 실적을 가진 국산영화에 외화의 수입권을 주는 국산영화의 보상책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은<sup>64)</sup> 두 집단의 상황이 매우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 그렇기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두 단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대립으로 인해 각기 다른 윤리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은 일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두 집단이 갈등을 겪은 지 약 한 달 만인 8월 5일, 내분을 극복하고 영화윤리전국위원회라는 단일한 단체에 함께하게 됐다는<sup>65)</sup> 점일 것이다.

영련, 그리고 제협과 배협의 면면과 평행선을 그리던 좌담회 등을 살폈을 때 이처럼 갑작스런 합의는 영륜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였다고보다 당대의 명분과 분위기, 그리고 각 단체가 처해있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61) 「돌로 갈린 영륜, 옥신각신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경향신문》, 1960.7.9.

62) 외화의 수입과 제작의 일원화, 즉 영화를 제작한 이들이 외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63년의 1차 개정 영화법의 적용을 받는 시기부터이다.

63)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영화의 발전 원인으로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입장세 면세 조치였다. 입장세는 오락 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입장 매출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국산영화의 경우 외화와 마찬가지로 입장료의 60%에 달할 만큼 그 비율이 높았다. 이것이 1954년의 법 개정을 통해 국산영화는 입장세가 면세되었고 외화는 95%, 1957년에는 115%까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산영화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몇몇 국산영화의 흥행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국산영화의 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조준형, 「1960년대 초 정변기 한국영화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1-72면.

64) 「문교부 고시 제53호」(1958.4.19.), 『관보』 제2015호, 공보실, 1958.4.16., 1-2면.

65) 「자율적 정화를 목적 영륜 창립총회」, 《한국일보》, 1960.8.7.(1958~1961, 552면).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두 단체가 갈라져 각각 영화윤리에 관한 기구를 구성하면서 영륜이 권위와 책임있는 사회단체로서 민의를 정당히 반영, 존속해야 하기에 통합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나<sup>66)</sup> 심지어 문교부 주무관들조차 가급적 외화도 민간에 맡기려 하니 영륜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sup>67)</sup> 압력이 가해졌고, “오늘날 영화계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영화윤리위원회”보다도 일본영화 수입으로 마찰을 빚는<sup>68)</sup> “장삿속에만 골몰하는 영화상인들”의 “야비한 속셈”이라는<sup>69)</sup> 비난은 입지가 좁아진 두 업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협은 4.19 혁명 전 회장이었던 임화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쇠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배협은 일본영화 수입에 대해 문교부가 바로 거부하면서 수입이 요원해진 상황으로 두 단체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살폈을 때 분명한 것은 영륜이 영화계의 열망으로, 모두의 희망으로, 무엇보다 직접 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내부적 합의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교 · 문학 · 아동 · 매스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심의에 참여했지만, 제협과 배협은 피검열자로서 심의의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 기구를 유지시키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영륜은 “헤이스 코드를 기점으로 한 미국의 프로덕션 코드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서독 등의 민간기구처럼 “늦게나마 자주 관리체계를 갖춘” 단체로 치켜세워졌지만,<sup>70)</sup> 영륜의 구성과정은 영화에 가해지는 다양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영화계를 지키기 위해 제작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규약을 만든 헤이스 오피스와는 분명히

66) 「돌로 갈린 영륜, 옥신각신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경향신문》, 1960.7.9.

67) 「두 개의 영화윤리위 한 위원회로 통합이 시급」, 《동아일보》, 1960.7.8.

68) 「별써 수입권을 노리고 혼미하는 영화계, 제협-영배가 충돌」, 《한국일보》, 1960.6.1. (1958~1961. 498면).

69) 「염치없는 상훈」, 《동아일보》, 1960.6.1.

70) 유한철, 「올바른 영화윤리를」, 《동아일보》, 1960.9.30.

다른 것이었다. 영륜은 민간심의기구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었지만 그 내부는 다시금 구분된 상황이었다. 특히 윤리위원들은 상업성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고, 검열의 구체적 절차나 성격 등의 이해를 선행하지 못한 채 심의업무를 시작했다. 영륜은 완성되지 않은 영화에 심의 필증을 내주어 말썽을 일으키거나<sup>71)</sup> 미처 심의가 끝나지 않은 영화를 문교부에 접수하여 문제를 일으키고<sup>72)</sup> 청소년 영화문제와 광고 선전물의 윤리 등 영륜다운 일을 해야 하는 임시총회에는 겨우 10명이 참여하여 빈축을 사는 등<sup>73)</sup>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본다면 영륜 내 갈등은 당연한 것이었다. 영륜이 발족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28명의 영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고 13명의 영륜 위원이 추대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유지위원회, 즉 제협과 배협 등이 규약을 어겨 총회를 조작한 것이라며 “영륜이 그들의 장사 속과 어긋난데서” 꾸민 “모사”로 간주, 유지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sup>74)</sup> 유지위의 요청으로 총회 개시일을 3월로 연기했으나 이 사이 새로운 회규 초안으로 “1월로써 임기만료라는 이유 하나로” “전기 위원인 28명 사회 저명 인사에게 일언반구의 통고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리고 “값지게 흘러진 파”를 모독하며 혁명의 소산인 단체를 상품처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sup>75)</sup> 현재로서 영륜의 회칙을 찾을 수 없어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지만 임기 만료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고 그 절차상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실 여부 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제협과 배협 등의 유지위를 “장사속”을 지닌 이들로, 영륜을 “4월 의거의 꽃으로

71) 「'영륜' 주변」, 《서울신문》, 1960.9.14.(1958~1961, 613면.)

72) 「영화에도 선전 윤리를, 영륜은 심의절차를 지키고」, 《경향신문》, 1961.04.14.

73) 「영륜의 권위는」, 《서울신문》, 1960.11.16.(1958~1961, 668면.)

74) 「개편된 영화의 나아갈 길 먼저 권위를 확립, 예측성에서 벗어나도록」, 《서울신문》, 1961.3.24(1958~1961, 867면.).

75) 「영륜은 독자성을 갖추라 업자에게 모르못트 취급을 받는대서야 될 말인가」, 《경향신문》, 1961.3.22.

서 영화계에 아담하게 피어난<sup>76)</sup>기구로 구분하며 전자를 비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지위가 실수를 한 것일지 의도를 한 것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영륜과 업자를 가르는 이 자체로 영륜은 영화계 내부 합의에 따른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을, 그렇기에 영륜과 업자들은 결코 함께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었다. 해당 사건 전하는 기사들은 유지위를 말썽부리는 위원은 빼버리고 업자들을 이롭게 해줄 위원으로 줄여 비용을 적게 들이려 하는 이들로 치부했<sup>77)</sup> '농간', '간과', '잔꾀' 등의 용어를 사용, 영륜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익단체로 위치시킨다. 영륜은 스스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불륜의 영화를 수입해다 상영하는 업자들의 유지비"<sup>78)</sup>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이용물이 될 수 없는 의지의 단체여야 하는 대립적 구도에 놓이는 것이다. 이 시선은 이상으로서의 '헤이스 오피스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957년 처음 민간심의기구라는 이름으로 문충의 윤리위가 구성되었을 때, 제작자들의 합의 하에 규정을 만들어도 경쟁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율적으로 지켜지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다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은<sup>79)</sup> 매우 적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마련될 수도 없었다. 오히려 피검열자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강화된 규제책들이었다.

76) 「개편된 영화의 나아갈 길 먼저 권위를 확립, 예측성에서 벗어나도록」, 《서울신문》, 1961.3.24(1958~1961, 867면).

77) 「업자가 자숙을 해야」, 《경향신문》, 1961.2.23.

78) 「영륜은 독자성을 갖추라, 업자에게 모르꼴트 취급을 받는대서야 될 말인가」, 《경향신문》, 1961.3.22.

79) 「영화윤리와 자본」, 《경향신문》, 1957.8.23.

#### 4. 권한 대행의 ‘심의’가 이끈 검열 강화라는 모순

우여곡절 끝에 영륜은 1960년 8월 5일 발족했지만 실제 심의는 한 달 후인 9월 5일부터 시작했다.<sup>80)</sup> 서류에 남아 있는 수정 표시를 통해 영륜 시기의 서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항목에 붉은 줄을 그어 ‘허가는 ‘신고’로, ‘허가 기간은 ‘상영 기간’으로, 그리고 ‘제한사항’ 역시 붉은 줄을 그어 없는 항목이라는 점을 표시했고,<sup>81)</sup> 영화의 ‘최초상영예정일’ 항목이 ‘최초상영예정극장’으로 변경되기도 한다.<sup>82)</sup> 이처럼 임시로 수정하여 사용하던 서류는 이후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어 제 형식을 갖추었고 1961년을 넘어서는 영륜에서 발급한 심의필증도 확인할 수 있다.<sup>83)</sup> 서류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4.19 이후 “검열”은 어딘지 “독재 국가의 관권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어휘까지 “말살” 해야 할 것이라는<sup>84)</sup>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한 듯 보이지만, 이 같은 ‘검열’에서 ‘심의’로의 전환은 용어가 변화했을 뿐 실제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발생했다.

이 상황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외화 검열, 특히 1961년 초에 일어났던 <젊은 육체들> 사태였다. 이 작품은 영국의 비트족 생활이 지나치게 표현되어 있어 모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륜이 처음으로 상영보류 조치를 한 작품이었다.<sup>85)</sup> 그러나 영륜이 처음 내린 조치에 수입

80) 영륜 발족 이듬해, 영륜이 9월 5일 심의를 개시하고 약 5개월간 국산영화 44편, 외화 111편을 심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존페기포에 선 영륜」, 《조선일보》, 1961.2.22.

81) 가령 1960년 9월 30일 자로 신고된 영화 〈백사부인〉의 심의서류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82) 가령 1960년 10월 28일 자로 신고된 영화 〈하녀〉의 심의서류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83) 가령 1961년 4월 26일 자로 신고된 영화 〈삼등과장〉의 심의서류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84) 박봉희, 「영화정책의 혁신을 중심으로- 문교부 장관에게」, 『국제영화』, 국제영화사, 1960.7., 41면.

85) 「상영보류 희망 제1호 영륜서 〈젊은 육체들〉에」, 《경향신문》, 1961.1.30.

업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교부와 영륜의 충돌이 발생했다. 문교부는 영륜에서 <젊은 육체들>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던 시간 전 신고필증을 발부하였고<sup>86)</sup> 원래 영륜의 심의 필증을 확인한 후 상영허가를 내주던 서울시 교육위원회 역시 문교부의 신고필증만으로 허가를 내주면서<sup>87)</sup> <젊은 육체들>은 영륜의 판정과는 정반대의 결과 역시 손에 쥐게 된 것이다. 문교부는 단순한 실수라 했지만 업자가 상영을 강행하면서 영륜은 문교부를 고발하겠다고 나설 정도로<sup>88)</sup> 갈등은 깊어졌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수입사는 문교부에서大本검열까지 나왔고 영륜의 심의를 존중하고자 내놓은 것인데 보류 희망이 나와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sup>89)</sup> 사실 수입사는 영륜에 두 번의 심의를 신청했다. 처음 심의신청을 했을 때 영륜은 사회풍기관계전문위원 11명이 모여 심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상영보류의 결정을, 두 번째로 재심을 의뢰했을 때에도 전원위원회에서 9대 7로 상영보류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sup>90)</sup> 특별한 문제 없이 개봉하려는 업자의 태도는 이상하지 않지만, '이 시기' 굳이 재심을 신청해가며 영륜의 심의를 넘기려는 피검열자의 관성적 의무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1년이라면 영륜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문교부의 불허 결정이라 해도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제재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젊은 육체들>의 사태는 영륜의 결정을 존중하여 문교부가 상영 불가의 결정을 내렸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 4.19 이후 불륜

86) 「〈젊은 육체들〉 상영 기세, 영륜은 문교부에 항의」, 《한국일보》, 1961.2.4.(1958~1961, 772면.)

87) 「영화 〈젊은 육체들〉 파동,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경향신문》, 1961.2.9.

88) 「조령모개의 영화 행정」, 《경향신문》, 1961.2.16.

89) 「상영보류 희망 제1호 영륜서 〈젊은 육체들〉에」, 《경향신문》, 1961.1.30.

90) 「〈젊은 육체들〉 말썽, 사회적 악영향을 우려하여 영륜의 상영보류 제1호」, 《한국일보》, 1961.1.28.(1958~1961, 761면.)

영화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은 이미 <젊은 육체들> 이전부터 있던 터였다. 외화 <연인들>이나 <폭력교실>의 상영이 결정되면서 영륜과 문교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학부모까지 나서 영화의 상영중지를 건의하는 등의 논란 후<sup>91)</sup> 다시 <젊은 육체들> 사태가 일어난 것은 자극적인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봉되고 있다는 것, 강력한 규제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문교부가 방만해서라기보다 4.19 직후인 1960년 6월 15일 자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영화의 검열, 즉 국가의 제재는 그 효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정 헌법 “제28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더 이상의 영화에 대한 행정적 ‘불허’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검열 서류에서 ‘허가를 ‘신고’로 수정한 것, 그리고 실질적인 실사심의를 영륜으로 넘긴 것 등은 이러한 헌법개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영화의 상영은 국가가 ‘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었고 검열을 맡아오던 문교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문교부의 다급함이 읽히는 것은 헌법개정 직후 문교부가 ‘개정 헌법 제 28조의 항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대해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서이다. 문교부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규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언론이나 출판에 영화나 공연물이 포함되는지, 아직 개정되지 않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19조에는 문교부 장관이 영화검열 사무를 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28조에 불구,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까지 영화 검열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묻고 있었다.’<sup>92)</sup> 이때 법무부는 언론 출판에

91) 「〈폭력교실〉의 상영중지 건의, 전국 사친연합서, 《경향신문》, 1960.12.13.

92) 「헌법개정에 따른 상영 및 공연물 검열에 관한 질의의 건」, 문교부 발신, 법무부 수신, 1960.6.18.

영화나 공연물도 포함되며, 정부조직법으로 영화검열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여타의 방법을 통해 즉 외화라면 무역이나 국내영화라면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sup>93)</sup> 두 관계기관 사이에 오간 질의서와 답변서는 어떤 식으로든 영화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그럼에도 영화를 제한할 때에 분명한 법적 근거를 찾으려 했다는 점을 드러낸다.<sup>94)</sup> 그러나 법무부의 답변처럼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한다 해도 당시의 문교부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륜이 문교부와 충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특히 영륜 스스로 “문교부 신고필증을 발부받는 것과 영륜의 심의는 하등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sup>95)</sup> 문교부의 결정이 무엇이든 (특히나 불허라면 더더욱)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영륜 스스로도 문교부의 결정과 영륜의 결정을 분리시키고자 했다면 이 상황에서 영륜이 <젊은 육체들>의 상영을 보류시키기 위해 설득하거나 부딪혀야 했던 것은 문교부가 아닌 배협이나 수입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륜이 수입업자를 설득했다거나, 수입업자들의 기구인 배협 등과 논의를 가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영륜의 불만과 항의는 문교부만을 향해 있었다. 정작 영화의 상영을 보류시킨 것은 영륜이었지만, 이러한 태도는 영륜이 문교부가 아직 권한을 준 채 여전히 민간을 억압하기에 대항해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이 <젊은 육체들>은 상영을 준비하고 극장에 광고를 시작했다.<sup>96)</sup> 이에 어떤 기관도 특별한 제재

93) 「헌법개정에 따른 상영 및 공연물 검열에 관한 질의의 건」회신, 법무부 발신, 문교부 수신, 1960.7.6.

94) 헌법에 영화와 연예에 대한 검열이 포함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개정,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헌법에서 부터이다. 해당 내용은 '제18조의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95) 「영륜 임시총회 개최」, 《경향신문》, 1960.10.1.

를 가하지 못했고 영륜은 이 모든 원인을 문교부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영륜은 영화의 상영이든 보류이든 정작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방향을 전혀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사 문교부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려 해도 이것의 위헌을 들어 항의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인 영륜이었다. 그러나 영륜은 발족 직후부터, 그러니까 이미 문교부가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를 잃었을 때에도 강하게 검열권의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교부는 국산영화의 경우 영륜의 심의를 받은 후 문교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남겨두었고, 외화의 경우에는 관세법 조항을 들어<sup>97)</sup> 제재를 지속하고 있었기에 당국의 개입은 영륜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혹은 실질적 검열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보았듯 함부로 ‘불가(不可)’를 허할 수 없기에 ‘가(可)’에 대한 확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영륜이 문교부로부터 검열권의 완전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검열 당국이 쥐고 있던 바로 그 권한, 상징적이지만 결국 피검열자가 관성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권한을 넘기라는 의미로 읽는 쪽이 옳을 것이다.

이는 영륜이 권고만 가지며 “커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화운리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나<sup>98)</sup> 영륜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각 협회의 정관에 ‘영륜을 반드시 거쳐야 상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임시총회에서 결의하는 등<sup>99)</sup> 장면의 삭제를 바라고 강력한 관리를 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륜 심의의 근

96) 「곧 상영 보류를 해제할 듯 <젊은 육체들>」, 《한국일보》, 1961.2.15. (1958~1961, 791면.)

97) 「외화검열제도 부활 실시심사를 엄격히, 추잡한 영화는 단속키로」, 《서울신문》, 1960.10.18.(1958~1961, 633면.) 이때 근거로 드는 것은 관세법 126조 ‘공안을 해치거나 풍속을 문란케 할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98) 권순영, 「소년 범죄에 영향, 배격해야 할 소득 없는 영화」(《동아일보》, 1960.11.4.) 이 글을 쓴 권순영은 영륜의 윤리위원이다.

99) 「영륜 임시총회 개최」, 《경향신문》, 1960.10.1.

저에 결국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리고 관권검열과는 다르지 않은 검열상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검열권 이양이라는 주장에는 기존 검열 주무부서가 진행하던 영화계의 '관리'를 영륜이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마치 영륜이 당국을 향해 불만을 표했던 것처럼 영화계 내부에선 영륜을 향해 법적 근거를 따지며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검열 주무부서가 영화의 불허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설사 문교부가 아닌 여타의 기관에서 제재가 들어온다 해도 영화 상영 자체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sup>100</sup> 즉 헌법이 국가의 영화검열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어느 정도 이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영륜이 내부적 결속을 다져 구성되었고 운영되는 단체였다면, 그리고 이 사이에서 영화윤리를 이루고자 했다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자유에 기대어 영화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자유를 맛 보아야 했을 것이지만 영륜은 이러한 '민주적인' 결론에 닿지 못했다.

<젊은 육체들> 사태를 다시금 되짚어 보자. 영륜의 심의는 명백히 피검열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먼저 영륜의 발족 후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이들은 영륜 심의라는 추가된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영륜 심의 후 문교부의 심의와 서울시 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절차, 그리고 외화의 검열은 관세법을 전제로 한 문교부의 확인과 함께 영륜의 심의를

100) <젊은 육체들>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문교부가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되자 나선 것은 다른 기관의 제재였다. 검찰은 <젊은 육체들>을 형법을 243조와 244조, 즉 음화 등의 반포나 제조를 근거로 입건하겠다고 수사에 들어갔고(「곧 상영보류를 해제할 듯 <젊은 육체들>」, 《한국일보》, 1961.2.15.(1958~1961, 791면.) 여의치 않자 이 작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세관이 현행 관세법에 규정된 법규를 무시하고 통관시켜 주었기 때문이라며 세관 당국자의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하겠다고(「세관서 부정 통관, 말썽의 영구영화 <젊은 육체들>」, 《경향신문》, 1961.2.10.)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수사'는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한 듯 번역된 제목인 <젊은 육체들>을 원제인 <비트걸>로 바꾸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조령모개의 영화 행정」, 《경향신문》, 1961.2.16.)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변관을 제외, 서울의 개봉 극장에서만 상영하는 것을 전제로 개봉한다(「서울서만 상영케, 말썽난 <비트걸>」, 《경향신문》, 1961.2.19.)

받는 이중의, 그리고 외화 수입을 위한 추천절차까지를 포함한다면 삼중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sup>101)</sup> 국산영화를 생각한다면 영륜 심의 전 국산영화의 검열은 사전 신고나 허가의 절차가 없었기에 영화제작 후 필름과 함께 상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지만 영륜의 발족 이후에는 영륜의 심의를 받고 문교부에 상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화계의 열망’으로 구성된 영륜이라면 적어도 영화 심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했지만 남은 것은 검열의 절차가 늘어나고 ‘유자해야 하는 기구만 늘어난 셈이었다.

또한 영륜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만드는 이들은 규제의 강화와 맞닥뜨려야 했다. <젊은 육체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영륜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수입업자가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 업자에게 이롭지 못한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sup>102)</sup> 예상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영륜의 ‘보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다시금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육체들> 사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개입했던 것이나 문교부가 영화의 수입 절차와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교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서류심사가 아닌 외화의 실사 필름을 본 후에 추천을 하겠다 밝히면서<sup>103)</sup> 이후 추천심이나 예고편, 선전 자료 등의 통관 추천은 문교부의 주최 아래 영륜과 함께, 통관 후 작품의 심의와 신문광고 극장 간판 등의 심의와 단속은 영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sup>104)</sup>

<젊은 육체들> 사태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은 영륜이 국가

101) 「촉구되는 영화 심의제도의 일원화」, 《조선일보》, 1961.2.26.

102) 「나쁜 외국 영화는 사들이지 말자, 영륜의 상영 보류 결정을 보고」, 《한국일보》, 1961.2.5.(1958~1961, 773면.)

103) 「영화 <젊은 육체들> 파동,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경향신문》, 1961.2.9.

104) 「통관 전은 합동으로, 문교부와 영륜 외화심의에 합의」, 《조선일보》, 1961.3.15.

검열과 다르지 않은 업무를 진행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결과였다. 처음 영륜의 논의를 시작했던 이들의 당대 영화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검열을 표현의 제재 정도로 인식하면서 작품을 판단했고 그것을 위해 절차가 추가되거나 개봉이 미뤄지는 등의 상황이 어떠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sup>105)</sup> 오히려 어떤 면에서 당국은 영화의 제작에 있어서도 외화의 추천에 있어서도 이미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이해(利害)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라는 또 다른 산업에 대한 기대로 검열의 조율이 진행되기도 했다.<sup>106)</sup> 그러나 상업성에 반감을 가지고 4.19 정신에 따라 관권검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에 따른 영륜, 즉 관권검열에 대한 반감을 보인 이들의 심의는 당대 영화계와의 합의를 피하지 않은 채 관권검열이 진행하던 그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영륜이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결국 영륜이 말한 이상적인 민간심의기구가 내부적 불화로 그리고 엉뚱한 대타항의 설정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영화 <젊은 육체들> 사태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외화 한 편의 개봉에 문교부와 영륜, 갑작스런 검찰, 세관까지 연루된 상황은 사실 매우 가벼운 실수에서 비롯되었을 확률이 크다. 문교부가 영륜의 심의필증이 나오기 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은 영륜을 무시해서라기보다 관성적인 업무처리의 실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젊은 육체들>이 영륜 상영보류 1호 작품이라는 점을 미루어 이전에는 영륜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니 오래 심의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문교부나 서울시 교육위 등은 기존 업무를 처리하던 대로 진행한 것으로

105) 가령 1961년 개봉한 <구봉서의 벼락부자>는 5군데의 화면삭제와 1군데의 대사삭제 지시 후 상영허가를 받는데(『국산영화 <구봉서의 벼락부자> 상영허가의 건』, 1961.7.8.) 이때 위촉된 위원들 중 유일하게 상영보류의 의견을 냈던 이는 영륜 위원으로 “건전한 희극성의 결여, 급후에 나올 코메디에의 \*고” 등으로 코미디 영화 자체의 수준을 평하여 상영 허가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

106) 예술과, 『검열유감』, 『문교월보』, 문교부, 1959.8., 40면 참조.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문제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영화가 개봉되었다고는 해도 영화의 상영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시화되었고, 추가적인 제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외화를 들여오려는 업자들은 형법과 세관의 눈치뿐 아니라 추천을 위한 서류 외에 (추천이 될지 말지 알 수 없는) 필름도 수입해야 했고 실사심의를 받을 때에도 또 다른 시선이 추가되는 것을 준비해야 했다. “사실상 검열의 부활”<sup>107)</sup>은 이 모든 사태의 결론이었고 이에 동의한 것은 영륜이었고 여기에 영화계는 빠져 있었다.

## 5. 허상의 자율성을 전제한 민간심의와 그 이후

4.19의 정신으로 결성된 민간심의기구 영륜은 억압적인 관권검열과는 다르다는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1960년을 “종래의 잔인무도한 관료 검열이 폐지되고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발족으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다고 평하며, 국산영화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작품을 내놓았지만, “4.19가 아니었더라면 보기 힘든 작품이 많다는 것을 상기할 때 혁명의 덕이 흐뭇이 느껴지는” 몇몇 외화를 꼽는 영륜 전문위원의 말은<sup>108)</sup> 정확히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수호했다고 자평하는 동안 업자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늘어난 검열 절차와 이후 더욱 강력해질 규제에 맞닥뜨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영륜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절대적인 지

107) 「외화 검열제 사실상 부활」, 《서울신문》, 1961.3.15.(1958~1961, 844면).

108) 허백년, 「1960년 영화회고-국산 전근대성 속에 정체, 도로 찾은 표현의 자유, 금연됐던 화제작 범람」, 《한국일보》, 1960.12.25.(1958~1961, 713면).

지의 시선은 이상적인 검열관(觀)을 지닌 검열자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따지고 본다면 피검열자의 입장에서 심의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도 삭제 지시에 응해야 하는 것도 바뀐 것은 없었으며, 이를 수행하는 데에 관의 지시가 더 무겁고 민간의 지시가 더 가벼울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륜과 민간심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쌓여가는 데에 이러한 시선은 굳이 언급될 필요는 없었다. 영륜의 명분은 무엇도 거슬러서는 안 될 가치였고 관이 아닌 민에서 실제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의를 진행하는 이는 물론 심지어 검열을 받는 이들에게조차 전과 다른 영화계를 세우고 있다는 믿음은 강요되었다. 영륜이 운영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아 일어났던 '유지위와 심의위원'의 충돌은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환상에 기댄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짐을 외부에서만 지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관권검열과 그리 멀지 않았던 영륜의 심의는 '민주적'이라 외치고자 했지만 분명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륜은 영화계가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내재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화계를 위해, 그러니까 저질 영화에서 탈피한 영화예술을 위해서라면 아직 검열이 필요하며, 이는 폭력적인 관권검열이 아닌 '자유로운' 민간검열을 통해야 한다는 믿음이 영륜의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영륜은 당대 검열 주무부서가 그랬던 것처럼 금지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범주를 넓히고자 광고와 청소년 관람 등 역시 규제의 범위로 넣으려 했다. 이를 진행한 이들은 보수적인 문충 내 윤리위를 지나 비슷한 범주의 각계 인사들로 명백하게 영화를 만드는 이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영화계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이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명백히 영화계 밖의 외부자들이라는 점이었다. 영륜 내에서 실제로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이들은 영륜이 운영될 수 있는 보조금을 내며 유지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뿐 피검열자로서의 지위는 과거와 동일했다. 영륜의 심의위원

들은 영화 심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화계 내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문교부라는 관의 방해로 규정짓고 대항하려 했다. 4.19 이후 헌법의 개정으로 문교부의 영화검열은 법적 근거가 없어 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륜은 관성적인 검열의 프레임 안에 갇혀 민간심의기구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과거의 검열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륜의 특징은 이후의 민간심의기구가 영화계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보조를 받는 위치에서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만약 영륜이 ‘민간기구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국가 검열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드러내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가는 민간심의기구를 경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1966년 1월 공보부의 보조금만으로 채워진 예산으로, 윤리위원 사이 공보부 관리 2인을 포함 시킨 민간기구 한국문화예술윤리위원회가 발족했다.<sup>109)</sup> 예륜은 ‘사이비 예술을 제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상 영화계에선 특별한 활동을 하진 못했고, 설사 의견을 낸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는 이유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sup>110)</sup> 그리고 약 10년 후 1975년 개정된 공연법 제25조 3의 근거로 공연윤리위원회가 1976년 5월 발족한다. 공륜의 위원은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었고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의 금지나 기타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였으며 예산 내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것도 국가였다.<sup>111)</sup> 이때의 공륜은 본격적으로 영화의 사전 시나리오 심의를 담당 하면서 영화의 제작과정에 개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민간심의기구였다.

영륜에서 예륜, 그리고 공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보는 표면적으로

109) 이승희, 앞의 논문, 295면.

110) 송아름, 「영화 〈기적(汽笛)〉의 표절시비사건이 드러낸 심의기구의 위상」, 『우리문화연구』56, 우리문화회, 2017, 393-421면 참조.

111) 「공연법」 25조의 3 참조, 1975.12.31.

‘민간기구’라는 명분을 지키면서도, 기구의 운영상 문제를 국가가 해결함으로써 민간심의기구가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준다.<sup>112)</sup> 영륜이 영화계 내에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던 운영비를 ‘국가가 해결하며 예륜으로, 예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힘을 발휘할 수 없던 문제 역시 ‘국가가 해결하며 법적 기구인 공륜이 발족한다. 이 기구들은 국가의 보조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회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분명한 ‘민간기구였다. 이처럼 독특한 형태의 민간심의기구는 다양한 모순과 마주해야 했고 이미 그 양상은 영륜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었다. 1960년에 발족했던 영륜, 그리고 영륜이 가졌던 관권검열에 대한 반감은 다를 것이라 믿었지만 결코 달라질 수 없는 조건들 속에서 다시금 국가 검열을 상기시키는 그 첫머리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

112) 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민간심의기구가 고스란히 검열에 반영했다거나 강화된 검열을 진행했다는 식의 의미는 아니다. 민간심의기구는 분명 민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영화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열을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는 관권의 형식을 따른 바 그 모순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 영화진흥공사, 1977.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한국영화인협회, 1969, 229-230면.
- 한국영상자료원,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1945-1957)』, 공간과 사람들, 2004.
- \_\_\_\_\_,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1958-1961)』, 공간과 사람들, 2005.
-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화사상사, 2000.

### 2. 논문 및 기타

#### 1) 논문

- 김윤지, 「최초의 민간영화심의기구, 영화윤리위원회 성립」, 함충범·김윤지·김대중·김승경, 『한국영화와 4.19』, 한국영상자료원, 2009.
- 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과정 연구」, 『겨레어문학』38, 겨레어문학회, 2007.
- 박지연, 「1960, 70년대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한국영상자료원 편 · 이효인 외, 『한국영화사공부 1960-1979』, 이채, 2004.
- \_\_\_\_\_, 「한국 영화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영화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 변재란, 「영화」,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III』, 시공사, 1999.
- 배수경,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송아름, 「영화 <기적(汽笛)>의 표절시비사건이 드러낸 심의기구의 위상」, 『우리 문학연구』56, 우리문학회, 2017.
- 이봉범, 「1960년대 검열체제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이승희, 「‘藝倫’의 역사적 추이와 제도적 임계」, 『민족문화사연구』63, 민족문화사학회, 2017.
- 이용관, 「헐리우드 검열체계」, 『영화연구』 8, 한국영화학회, 1991.

이준엽, 「해방 이후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 연구(1945-1965): 정전화된 작품과 비평 담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22.

조준형, 「1960년대 초 정변기 한국영화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3) 잡지

『국제영화』, 『씨네팬』, 『문교월보』, 『영화세계』

## 4) 공문서

『관보』(공보부 발행), 「헌법개정에 따른 상영 및 공연물 검열에 관한 질의의 건」(문교부 수·발신, 법무부 수·발신)

## 5) 법령

「공연법」, 「관세법」, 「문교부 고시」, 「영화법」, 「헌법」, 「형법」

## 6) 심의서류

〈구봉서의 벼락부자〉(김수용, 1961), 〈백사부인〉(신상옥, 1960), 〈삼등과장〉(이봉래, 1960), 〈오발탄〉(유현목, 1961), 〈하녀〉(김기영, 1960)

## Abstract

### The illusion of antipathy, The 'Free' civilian deliberative organization 'Youngryun'

Song A Rum

The National Committee for Film Ethics has been described as a civilian deliberative organization established to inherit the spirit of 4.19, to avoid the censorship of the past and to ensure the autonomy and artistry of films. The establishment of the Youngryun has been of great significance in Korean film history, as the long-standing state censorship was transferred to private hands and, most importantly, the organization was composed of the power of the film industry. It is worth noting, however, that the assessment of the Youngryun is constructed by proxying the violence of authoritarian censorship rather than by identifying specific activities. In fact, Youngryun's activities were not so far removed from the methods of the authoritarian censors, and in some ways, it was because they faced extreme discord with the film industry. The Youngryun was made up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ho considered Korean film to be of a very low standard and believed it should be regulated through bans. Youngryun's code of ethics, which is not too dissimilar to the one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eals how Youngryun treated the Korean film industry.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was founded by The Motion Picture Alliance, who is far removed from the production of the movie, reveals that Youngryun is far removed from the spontaneous movement within the film industry. The organization was formed around The Motion Picture Alliance, who had previously shown affinity with social figures who advocated the need for regulation of Korean cinema, while those who actually produced and imported films were forced to pay for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amidst increased censorship procedures. This Youngryun of

people from outside the film industry never thought to solve problems internally as they arose, and it was turning into a deliberative process that was effectively similar to state censorship. 4.19 Even when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shortly after the revolution to make even the Ministry of Education's censorship of films unconstitutional, Youngryun sought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put itself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censors, and did not consider consulting with the film industry. This created a paradox that binds the film industry, forcing the censored to face deliberations not unlike those of the bureaucratic censors, only more intense. In this way, the Youngryun demonstrated that a body of civilian deliberation can never exist as a free body if it is not formed by internal forces and if it tries to follow the methods and powers of the state censorship.

Key Word: 4.19 Revolution, Administrative restrictions, censorship, civilian deliberative organization, ethics code, Hays office, Korean Committee for Film Ethics (Youngryun), Korean Film Distributors Association (Baehyup),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Jehyup), National Federation of Cultural Organizations (Munchong), The Motion Picture Alliance(Youngryeon)

접 수 일: 2024년 3월 15일

심사기간: 2024년 3월 21일~2024년 3월 31일

계재결정: 2024년 4월 15일